

전주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가단111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D

피 고 E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피고와 F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F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20. 10. 19. 접수 제265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허윤범

별지